

# 은행권 제도개선 TF 제2차 실무작업반 간담회

- ① 카드사 종합지급결제 업무 허용
- ④ 은행의 보증부대출 취급 한도 도입

## 전자금융거래법 개정

□ 법 개정을 통해 종합지급결제업무의 범위, 진입요건 등을 정의하여 제도화

### < 주요 내용(예시) >

- 금융업으로서 적격 사업자(카드사 등)를 금융위 허가
  - 금융회사 수준의 신원확인 의무 부과 등
- 은행 수준의 보편적 지급결제 서비스를 One-stop으로 제공 가능토록 종합지급결제업 정의
  - 직접 계좌 발급 및 금융결제망에 참가하여 이체·결제 수행
- 상법상 주식회사로, 최소자본금 200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함
-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대한 특례 신설

※ 『종합지급결제사업자』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전금법 개정안이 의원발의( '21.11, 김병욱의원안 등) 되었으나, 현재 논의가 잠정 중단된 상황

### 해외 신용카드사 종지업 영위 사례

- 일반적으로 해외에서는 은행(유니버설뱅크)이 계좌를 보유하면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 있으나, 영국, 싱가포르 등에서는 전금법 개정안의 '종합지급결제사업자'와 유사하게 기능별로 규율하고 있음
- 영국은 지급서비스지침(PSD2) 시행으로 전자화폐업자(EMI)와 지급결제업자(PI)\*에게 은행과 같은 계좌기반지급서비스(ASPSP) 가능
  - \* PI의 경우 ASPSP 업무를 하려면 ASPSP 인가를 받아야 함
- 영국의 경우 전업 신용카드사가 EMI, PI 인가를 받아 계좌기반지급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
  - 신용카드 발급 및 매입사인 MBNA는 PI 인가, 신용카드사 Cashplus는 EMI 인가

#### < 해외 지급결제 업종 현황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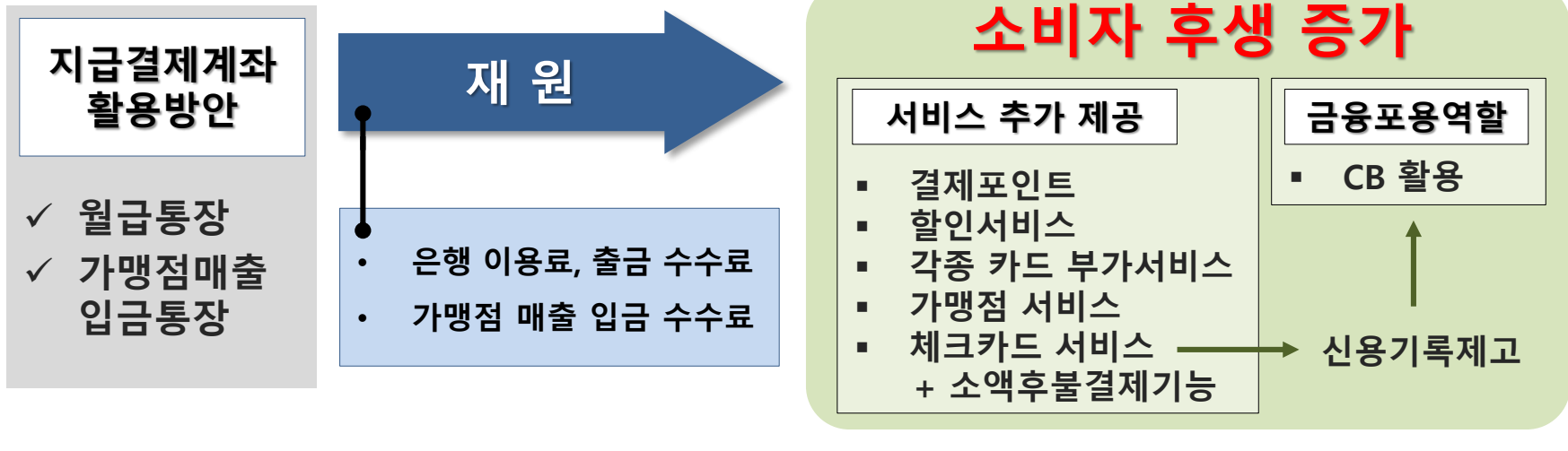
구분	해외의 지급결제 업종 현황		
영국	전자화폐업자 (E-Money Institution)	지급결제업자(Payment Institution) {지급지시전달업자(Payment Initiation Service Provider) 포함}	
싱가포르	주요 지급결제업자 (Major Payment Institution)	일반 지급결제사업자 (Standard Payment Institution)	환전업자 (Money Changing)

#### 경쟁 촉진

- 예금 및 지급결제 부분에서 은행의 **유효 경쟁을 촉진**함으로써 은행 산업의 **과점 이슈 완화**
  - 은행외 다양한 사업자가 진입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**지급결제 전반의 서비스 질 향상 유도**
- ▶ **소비자 선택권 확대**
- 다양한 사업자간 경쟁으로 **고객에게 신유형 서비스 제공\***
  - \* (예시) 카드사 - 소득공제 한도 감안 신용/선불/직불 복합 결제 비율 맞춤형 서비스 등

#### 소비자 후생 증가

- 은행 계좌 없이도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통해 **보편적이고 편리한 디지털금융 서비스 제공**
  - ▶ **금융소외자 및 디지털금융 취약계층**에 금융 접근성 제고 및 금융이력 축적 기회 부여
- 카드사 지급결제 플랫폼에서 **다양한 금융·소비·생활편의 서비스\*** 제공
  - \* (예시) 결제포인트, 할인서비스, 다양한 부가서비스, 가맹점 서비스 등



### 건전성 및 소비자 보호

□ 소비자보호 사각지대 발생, 지급결제처리 안정성 저하, 우월적 지위 남용 가능성 우려

▶ 제도적 장치마련으로 해소 가능

- ① 고유업무와 종합지급결제업무를 **별도 관리**
- ② 수취자금 **안정성 확보**
- ③ **이해상충방지 알고리즘 도입**

▶ 카드사 - **리스크관리 및 지급결제 역량 보유\***

\* 연간 1천조원 규모의 지급결제처리 중

### 시장질서

□ 종합지급결제업은 대출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지급결제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나, 카드사는 각종 대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은행업을 영위하면서 낮은 규제로 인해 안정성 우려

▶ 제도적 장치마련으로 해소 가능

- 은행의 지급결제 부문에 해당하는  
규제(스몰라이센스) 적용

▶ 종합지급결제업은 **결제불이행 위험 낮음**

- 수취자금에 이자 지급 불가
- 대출 등 고객자금 운영 불가

## ④ 은행의 보증부대출 취급 한도 도입 관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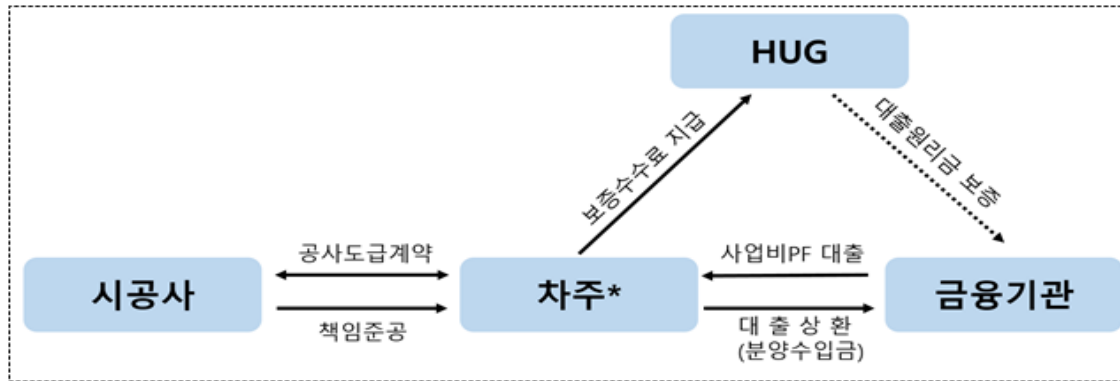
### 주요 내용

- ✓ HUG PF보증상품(정비PF, 모기지 보증) 보증채권자 범위\*에 여전사를 추가하여 비은행 금융기관의 보증부대출 취급 확대

\* (현행) 은행, 보험, 증권, 상호금융, 새마을금고, 집합투자기구 등

- 보증채권자 범위에 여전사 추가를 위해서 HUG 내규 개정 필요

※ [참고] HUG 보증상품 구조



\* 재건축·재개발 사업 조합, 주택개발사업 시행사 등

### 필요성 (장점)

- ✓ 여전사 시장참여 확대로 인한 차주의 원활한 자금공급 지원 가능
- ✓ 동일한 PF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(대주단) 간 규제차익 해소로 인한 규제형평성 제고

### 우려사항

- ✓ 여전사의 부동산PF 취급 확대에 대한 신용위험이 보증기관으로 전가된다는 우려가 있으나, HUG 보증상품은 차주의 사업에 대한 보증이므로 채권자(금융기관)의 구성이 보증의 안정성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음

## ④ 은행의 보증부대출 취급 한도 도입 관련

### 주요 내용

- ✓ **사잇돌대출 취급기관에 여전사를 추가하여 비은행 금융기관의 보증부대출 취급 확대**
  - 사잇돌 I : 은행, 상호금융, 인터넷전문은행
  - 사잇돌 II : (현행) 저축은행 + **(개선) 카드, 캐피탈**

### 필요성 (장점)

- ✓ **사잇돌 I 과 사잇돌 II 사이의 금리공백을 해소하여 소비자 선택권 확대**
  - 은행·상호금융이 취급하는 '사잇돌 I' 금리는 6~9% 수준,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'사잇돌 II'의 금리는 11~19% (서울보증보험 제공자료('22.5월 기준))
  - 여전사 중금리대출은 9~14% 수준이므로, 금리단층 구간에 속하는 금융소비자에게 대출공급 가능
- ✓ **저신용(신용 하위 30%) 차주의 승인율을 제고하여, 서민금융으로서의 정책목적 강화**
  - 신용 하위 30%의 보증심사 승인율은 사잇돌 I 보다 II가 더 높으므로, 여전사의 사잇돌 II 취급 시 취약계층에게 충분한 자금공급을 통해 정책목적 달성 가능

### 우려사항

- ✓ **저신용 서민 대상 보증부대출 취급 증가로 인한 보증기관의 신용위험 리스크 증가 우려**  
→ **보증부대출 허용 시 충분한 리스크 관리 및 심사 역량을 지닌 여전사에 허용 필요**